

## 폐기물 관련법제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고 문 현\*

우리나라의 폐기물법제는 60~70년대의 「오물청소법」시대와, 70~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정비되고 발전하여 왔다. 단순처리방식의 폐기물관리정책이, 「폐기물관리법」 제정(1986년)을 계기로 재활용개념을 도입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1992년)되고, 재활용 촉진관련 개별 법령들(건설폐기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이 뒤따라 제정되면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법제의 연혁과 현황, 폐기물관련법제의 주요 변화, 폐기물관련법제의 전망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주셨다.

현행 폐기물법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배출량에 의한 분류체계 정비’에 관한 것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을 1일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리고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단지 그 양이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않는다 하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취급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개념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양

---

\* 숭실대학교 교수

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체계는 사업장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양과 종류에 따라 처리기준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생활폐기물은 “사업활동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량 미만의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발생량 기준은 현행기준과 그간의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이나 광업 관련 업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류가 특히 필요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구분과, 대형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분류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예로 열거된 것 중, 동물의 사체는 오늘날 동물을 존중하는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규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동물잔해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동물잔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송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폐기물과 비폐기물(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재활용가능자원”이 폐기물에 종속되는 개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순환자원”개념이 관련 법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재활용의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자원의 순환적인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자원순환형사회를 지향한다면, 현재의 “폐기물”개념체계에서 벗어나. “순환자원”의 개념을 “폐기물” 개념에 선행시키고, 이를

관련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개념을 “순환자원”으로 바꾸는 한편, “순환자원”의 개념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재생산이나 재유통 ㄸ 재소비 과정에 다시 투입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재정의 하여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도 개정하여 “폐기물”을 축소된 개념으로 조정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순환자원으로 쓸 수 없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재정의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일부 개선하여, 생활계폐기물의 경우에도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생활폐기물”과 “생활계유해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계유해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성폐기물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순환관리의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사회구성원 모두가 순환사회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순환자원”의 새로운 개념정의를 토대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법제 정비방안은,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확대·개편하여, 가칭 “순환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확대·개편되는 “순환사회형성촉진법”에는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 위한 기본원칙과 정책의 우선순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정책의 강화와 관련 산업의 육성등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에 관한 분야에서 모법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법체계 형태인 가칭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형태를 취할 경우 『재활용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은 주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축소된 법률이 되고, 분야별로 개별 재활용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의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진은, 결코 멈출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넘어 “순환자원”이라는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전환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개념의 수정과 함께 법제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